
-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에 대한 -
소관부서 추진상황 보고

2023. 03.

마포구 도시환경국

- 목 차 -

1.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자원순환과)	1
2.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도시계획과)	6
3.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맑은환경과)	8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추진 관련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마포구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추진 관련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3153-9210 청소행정팀장: 박준 ☎9201 담당: 이승룡 ☎9209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TF팀 구성 및 대응

구분	비전임 TF팀	전담 TF팀
구성일시	2022.8.31. ~ 9.29.	2022.9.30.~
역할 및 주요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부서별 비전임 활동 (홍보, 법률지원, 행정지원 등) - 입지선정 과정의 불공정, 불평등, 부당성 논거 집중 발굴 - 긴급 언론 대응 및 여론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팀장 외 2명 (필요 시 인력 탄력적 보강 운영) - 기능부서별 지원 (홍보, 법률 등) - 추가 소각장 설치 대응 전담 -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대안 집중연구 - 기피시설 백서 발간 연구

- 입지선정 관련 마포구 의견제출 총 8회 (마포구 → 서울시)
-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 투명공개 자료 요청
-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점검 및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소송 등 법적 대응 시 공동대응 등 적극 지원 예정
- 홍보 및 언론
 - 입지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 (2022.8.31.)
 - 입지선정 철회 촉구 구청장 기자회견 (2022.9.28.)
 - 언론보도 총 877회 (방송 25, 중앙 50, 지역 77, 온라인 725)

□ 추가 소각장 건립 대안을 위한 연구 경과

- 서울시 일일 쓰레기 배출량 3,200톤 중 4개 소각장 처리량 2,200톤, 1,000톤 매립 중이며 2026.1월부터 직매립 금지
- 소각폐기물 저감을 위한 연구 (1,000톤 저감하면 소각장 건립 불필요)

○ 생활폐기물 성상분석회 개최 (2022.10.11.)

- 종량제 봉투 파봉 후 성상분석 및 재분류 작업을 통해 64.3% 감량

○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쓰레기 감량 실험 (2022.10.25.~11.13.)

- 홍보 및 교육만으로도 56.58% 감량

○ 전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실증 (2022.11.17.)

- 분쇄·선별을 통해 생활폐기물 86.7% 감량

○ 신규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마포구 대안 서울시 제출 (2023.1.19.)

□ 향후 추진 계획

○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한 감량 실험 (동단위 확대) (2023.2.15.~)

- 추가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별 관심도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한 감량실험 범위 확대
- 도화동 9,400여 세대 분리배출 홍보 리플릿 및 가정용 분리수거함 배부

○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추진 (2023.3.20.~)

- 전국 최초 재활용중간처리장 “소각ZERO가게” 설치·운영 예정
- 구청 광장 내 1개소 시범설치·운영 완료 후 단기적으로는 4개소 추가, 장기적으로는 관내 100개소 이상 설치·운영추진 예정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정에 대하여 (서울시·시의회 의견제출 자료)

□ 서울시의 마포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1) 최종 후보지 결정(2022. 8. 25.) 이전, 소각장 위치를 이미 특정지역으로 미리 정해둠

가) (2022. 6. 30.)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

- 1차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요약 보고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의결

나) (2022. 7. 25.)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14개 아파트 단지 대상의 홍보비용 언급

※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현황: 14개 단지

- 상암월드컵파크 1~12단지,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 휴먼시아

다) (2022. 8. 25.) 입지선정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

- 최적 후보지 선정

2) 2022.8.25. 11차 회의 시 입지선정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7.25.(월)에 특정지역 염두해 언급하고 있어 10차 회의에서 사실상 마포구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평가기준을 마포구 맞춤형으로 만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홍보예산으로 1억5천만원 증액 요구에 대한 김재진 의원 질의에 대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답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저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선방송이라든가 케이블채널 등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부당성

1) 서울시는 2020. 12. 4.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였고, 위원회 설치 이후인 2020. 12. 8.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칙(제2조, 개정 전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주장함

2) 그러나 2020. 12. 4.는 위원 위촉 계획서 방침을 받은 날짜일 뿐,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 [자원순환과-20238(2020.12.4.)]

3)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은 2020. 12. 15.이며, 서울시 역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12. 15.를 위원회 설치일로 홍보하였음

- 위원회 설치는 ①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되고 ②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임하고 ③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완료된 상태, 즉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참여해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 다시 말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날’이 아닌,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 즉 서울시가 각 후보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 후보자들이 위촉장을 받고 위촉을 수락하였을 때를 위원 구성과 위원회 설치가 완료된 것임. 이 날짜가 2020. 12. 15.임.
-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라도 후보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위촉식 전에 위원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 되어야 실제로 위원이 되는 것임.

4) 따라서, 설치일이 2020. 12. 15.이므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즉 개정 시행령(12. 8. 개정, 12. 10. 시행)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아래사항은 위법**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구 분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주민대표
개정 전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시·도 공무원 1명	시·도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개정 후	위원장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명 이상 4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위원회 현황	10명	1명	3명(마포구민 없음)

- ① (위원 정원)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
- ② (공무원 위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1명
- ③ (주민대표)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음

□ 강동구에 선제 대응 구실 제공

- 1) 서울시는 2018. 7. 2.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 2) 이를 집단민원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강동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반대를 위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
 - ①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 7. 2. 박원순 시장방침)
 - ② 「공개모집 방식 입지선정 추진계획」(2019. 5. 24. 기후환경본부장 방침)

20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2018년도 강동지역선정 공모방식 변경 등 김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답변(2021.11.2.)

- ▶ 2018년 강동으로 계획했다가 집단민원 때문에 공모방식 변경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 서울시 생활폐기물정책의 문제점 마포구에 전가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의거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하였을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정책 부재로 서울시 여러지역에서(강동, 구로, 중랑, 강서 등)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지금의 자원회수시설 용량의 부족함을 초래
- 3) 이는 서울시가 근본적인 행정부재이며 현 문제를 마포구에 전가하는 행정
※ 서울권역 공공 택지 지구

구분	고덕강일	마곡지구	양원지구	향동지구	신내3	천왕1	상암2	강남 공공주택
위치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일원	강서구 마곡동 일원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구로구 향동 일원	중랑구 신내동 일원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마포구 상암동 일원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면적	1,660,535㎡	3,665,783㎡	345,291㎡	662,525㎡	584,107㎡	484,477㎡	341,811㎡	938,992㎡

□ 생활폐기물 감량노력하면 소각장 추가 요인 해소

- 1) 10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면 소각장 추가설치는 필요 없음
 - 가) 현재 서울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200톤. 이 중 2200톤은 4개 소각장(마포, 강남, 노원, 양천)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톤은 매립 중
 - 나)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서울시는 매립분 1000톤에 대한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확보와 분리배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1000톤을 감량하면 소각장 추가 건립은 불필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153-9360 도시계획팀장: 김용명 ☎9351 담당: 김선혜 ☎9353

□ 대상지 현황

- 명칭(위치): 상암동 광역 자원회수시설(상암동 481-6번지 일대)
- 시설 결정: (최초) 1977.8.3.(서울시고시 제264호) / (변경) 1997.2.25.
- 토지 현황: 자연녹지지역, 공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 도시계획 결정 현황: (최초) 1977.8.3. (변경) 1997.2.25. 결정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결정내용	고시번호
1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상암동 482일대	878,270평	신설 (최초)	서울특별시 제264호 (1977. 8. 3.)
2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상암동 482일대	913,557평	면적 변경 (증가)	서울특별시 제64호 (1978. 2. 24.)
3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상암동 1536일대	3,012,037㎡	면적 변경 (감소)	서울특별시 제644호 (1983. 11. 29.)
4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상암동 1536일대	2,995,577㎡	면적 변경 (감소)	서울특별시 제72호 (1986. 2. 3.)
5	폐기물처리시설	상암동 1536일대	2,963,840㎡	면적 변경 (감소)	서울특별시 제226호 (1996. 8. 16.)
6	폐기물처리시설	상암동 1536일대	2,962,702㎡	면적 변경 (감소)	마포구 제1996-73호 (1996. 10. 31.)
7	폐기물처리시설	상암동 1536일대	2,961,859㎡	면적 변경 (감소)	마포구 제1997-4호 (1997. 2. 25.)

□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국토계획법 제43조②)

- (일반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 (예외사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시설축진법’에서 입지결정(법 제10조) 및 설치계획 승인(법 제11조의3, 제12조) 기준 마련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허가권자와 협의로 건축허가(신고)처리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폐기물시설축진법’이하 ‘법’

구 분	법조항	추진기관	비고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침 수립		서울시	자원순환과-10562(2018. 7. 2.) [강동권역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②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법 제9조	서울시	자원순환과-8978(2019.5.24.)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 공고기간 : 2019. 5. 30. ~ 7. 28.(60일) • 재공고기간: 2019. 9. 19. ~12. 17.(90일) ※ 입지후보지공모 신청 접수: 없음
③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법제9조 영제10조	입지선정 위원회	-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통보 및 공고 (일간지, 시보, 홈페이지) -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 (한국종합기술, 동해종합기술)
④ 입지후보지 타당성 결과 공고 및 주민 공람	법제9조 영제10조	입지선정 위원회	- 타 지자체 협의: 해당없음(300m이내 만) - 지역주민 의견제출 (공청회, 설명회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2022. 9. ~ 2023. 3.)
⑤ 입지선정	법제9조	입지선정 위원회	
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법제10조	서울시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고시	법제11조 의3	서울시	• 의제사항(폐기물시설축진법 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산지전용허가 등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2023.10.~12. • 공사시행: 2024.1.~2026.12.
⑧ 주변영향지역 고시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법제17조	서울시	•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많은환경과장: 박광운 ☎ 3153-9260 대기질관리팀장: 장용수 ☎ 9271

□ 개 요

- 계획명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 사업시행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서울특별시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 계획의 주요내용
 - 처리대상물 : 서울특별시 관내 발생 생활폐기물
 - 사업면적 : 21,000㎡
 - 시설용량 : 1,000톤/일

□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그간의 진행사항

- 2022.12.21. (서울시 ⇒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의견조회
- 2023. 2. 3. (마포구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붙임 1. 참고
- 2023. 2.20. (서울시 ⇒ 마포구)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공고 알림
 - 일시 : 2023. 3. 7(화) 10:00
 - 장소 :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마포구 성산동 515-39)

□ 법령근거 및 기준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u>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u>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3)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3) 중간처분시설 중 <u>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u>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 붙임 2.

- 붙임 1.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각 1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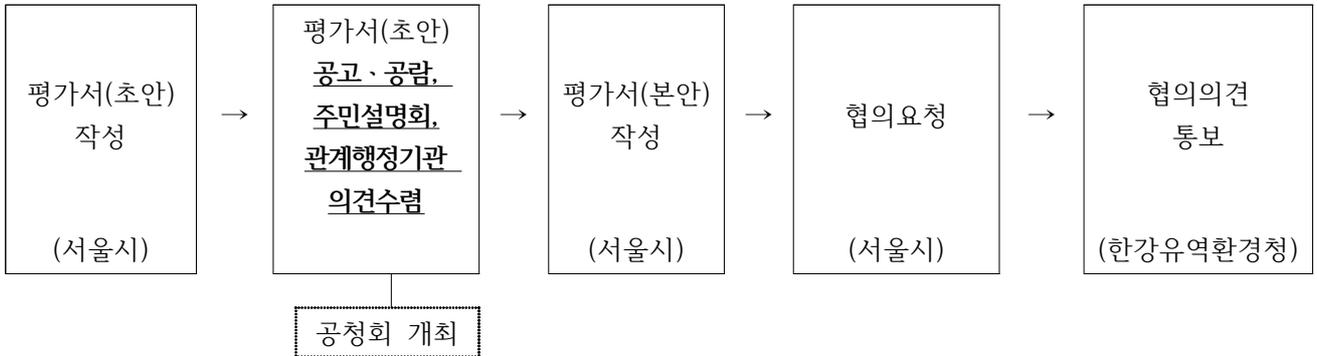
□ 계획의 적정성 관련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내용인 폐기물 재활용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성 향상 및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추진방향이 소각시설 신규설치 지양인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대안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나,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라는 두 가지 대안만을 제시하여, 재활용/전처리/폐기물 감량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안을 검토하지 않음
 - 2026.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매립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사실상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안의 설정은 ①계획 대안 ②추진 전략과 방법 ③수요와 공급 ④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시기와 순서 ⑥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계획비교’, ‘시기와 순서’, ‘기타’ 항목으로만 구성하여 ‘입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이라는 주요 고려사항을 누락함

□ 입지의 타당성 관련

- 상암동 월드컵공원은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마포자원 회수시설은 월드컵공원과 인접되어 있으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 영향 측면에서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서울지역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치구는 5개구(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권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안)의 소각시설 용량을 1,000톤/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존 소각시설 가동과 맞물려 2026~2035년까지 약 1,750톤/일이 가동되고, 이는 5톤의 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일일 350대가 운행함에 따라 매연 및 비산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일상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상암동은 초·중·고, 어린이집, 저소득층, 어르신 공동주택(카이저팰 리스) 등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다수 거주하여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상암동 지역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수소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기피시설 집중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상 피해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 평가서(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2. 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2,13,14조, 시행령 제12,13,15조]

-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제출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초안 제출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공람기간 20~40일)
-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평가서(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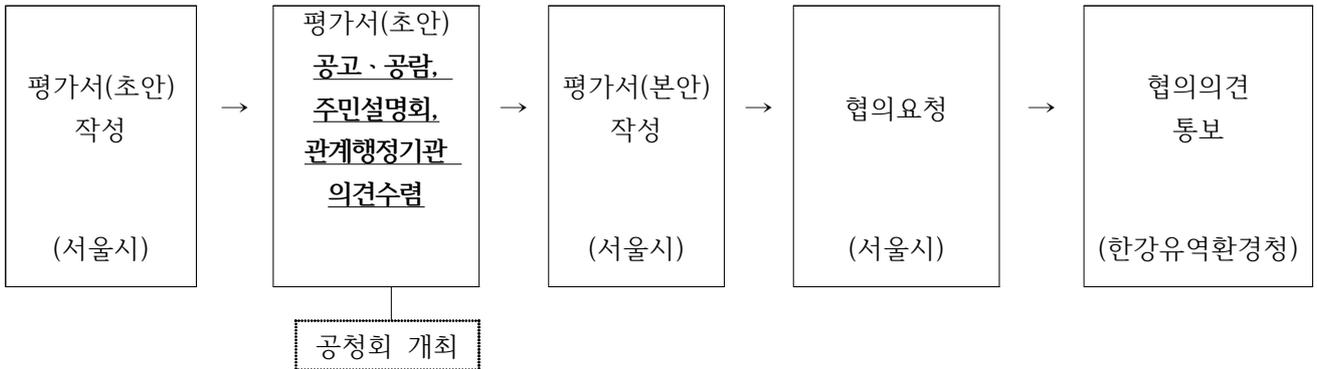
4. 협의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16,17조, 시행령 제22조]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5. 협의의견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평가서(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시행령 제34조]

2. 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2,13,14조, 시행령 제36,39조]

-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제출기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초안 제출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공람기간 20~6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평가서(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시행령 제46조]

4. 협의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시행령 제47조]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5. 협의의견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

-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서울시)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통보